

의왕역 SK VIEW」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4층, 13개동, 총 1,857세대 중 일반분양 8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예정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분양문의	031 - 427 - 1857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45.9344	45	45.9344	23.4813	69.4157	42.7310	112.1467	3(15)
059.8216A	59A	59.8216	26.6495	86.4711	55.6497	142.1208	7(35)
059.7397B	59B	59.7397	26.6509	86.3906	55.5734	141.9640	42(210)
084.6871A	84A	84.6871	30.0039	114.6910	78.7811	193.4721	5(25)
084.3460B	84B	84.3460	29.8721	114.2181	78.4638	192.6819	14(70)
084.2485C	84C	84.2485	30.2609	114.5094	78.3732	192.8826	11(55)
합계							82(410)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의왕시청의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45	59A	59B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1(5)	1(5)	6(30)	1(5)	2(10)	2(10)	13(65)	
	장애인	서울특별시	-	1(5)	6(30)	1(5)	2(10)	1(5)	11(55)
		인천광역시	-	1(5)	6(30)	-	2(10)	1(5)	10(50)
		국가유공자	1(5)	1(5)	6(30)	1(5)	2(10)	2(10)	13(65)
	장기복무 제대군인	-	1(5)	6(30)	-	2(10)	1(5)	10(5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5)	6(30)	1(5)	2(10)	2(10)	12(60)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6(30)	1(5)	2(10)	2(10)	13(65)	
	합계		3(15)	7(35)	42(210)	5(25)	14(70)	11(55)	82(410)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까지 가능하며, 상기 배정세대의 “()”는 예비 추천자 수입니다.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0.(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사 홈페이지(https://uws.skview.co.kr)
건본주택 개관	2026.07.16.(목)	당사 건본주택(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3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6.07.20.(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6.07.29.(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⑦카카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필요서류는 홈페이지 서류안내 참조)

3. 신청자격 안내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확정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청약통장 자격요건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지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4.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청약 신청은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하며,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안내

대표번호	031-427-1857
홈페이지	https://uws.skview.co.kr